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추진방향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1. 머리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 각국은 데이터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부상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린다. 이는 데이터가 분석·가공 등 활용 단계를 거치면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유용한 부가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마이데이터이다.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는 내 뜻대로 관리 한다’라는 정보주체의 인식이 확산되고, 스마트폰 보편화로 정보주체가 동의를 획득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편리해진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원본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라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금융, 공공 등 일부 개별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을 개별법에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데

이터 연계를 통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전분야에 마이데이터를 확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는 시점이다.

2. 개인정보 보호 활용 컨트롤타워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출범하였다. 그간 행정안전부가 담당해 온 일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 온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업무, 금융위원회가 담당해 온 상거래기업에 대한 조사·처분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의 총괄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소관하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EU, 영국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범 이후에는 코로나19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개선하고 개인정보의 잊힐 권리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어린이집 CCTV 열람권을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기반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와



[그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마이데이터를 두 축으로 적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2개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의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2년 간의 가명정보 결합 선도 과제 성과발표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인 마이데이터는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추진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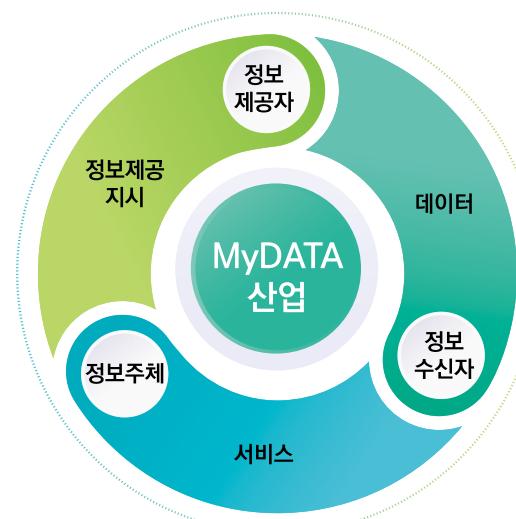
3.1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다른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주인인 정보주체에게 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전송하거나 다른 기업 등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그간 제3자 제공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 목적에 정보주체가 동의하여 이루어졌던 반면,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인, 제3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점이다.

금융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가 이미 각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그외 다른 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전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국민은 번거로운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입학 또는 취업을 위한 민간 영어성적표,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정보와 식생활 정보, 건강 정보 등 다른 분야 정보의 결합 분석을 통해



[그림 2] 마이데이터 소개

건강을 위한 음식, 운동, 생활습관 등에 관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인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관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로서 적극적·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정보주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도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신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걸어온 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 5일 정무위원회를 통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작업과 함께 전 분야 막힘없는 데이터의 이동을 위

하여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데이터의 형식 표준화와 전송방식 표준화, 표준화 우선 추진 분야 선정 등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에서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 5대 분야를 선정·발표하였으며, 5대 분야에 대한 데이터의 형식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정보맵)를 정하여 표준화 대상정보를 선정하고, 전송규격에 관한 표준화를 개발하고 있다.

11월에는 마이데이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소개하고 국제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3.3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을 위해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제공자 및 정보



[그림 3] 마이데이터와 제3자 제공 비교

수신자의 범위, 전송 요구 대상정보의 범위 및 요구절차,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법률 개정에서와 같이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이데이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보주체가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력과 전송요구 동의·철회이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전송대상 개인정보항목 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한다.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 전문기관 등에게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전송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식별·인증 및 보안에 관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표준화 우선 추진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4. 맷음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들은 기업이나 기관의 요

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나의 대한 데이터를 통해 건강관리, 식단관리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서비스 질 상승 및 가격 하락 등 소비자 후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용자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구현 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어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한 마이데이터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 마련, 표준화, 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가 우리나라를 데이터 강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